오하자산운용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제 2 조(목적)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필요한 경우 관할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 제28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3호 ~ 15호 <생 략>	**제 2 조(목적)**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필요한 경우 관할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2.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3호 ~ 15호 (현행과 같음)
제 4 조(공고의 방법)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폐간, 휴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4 조(공고의 방법)**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ohaasset.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8 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신 설>	**제 8 조 (주식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항을 ③항으로 ② 회사는 종류주식 발행 시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의 50%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 및 주주가 적절히 요청하는 단위의 주권으로 한다.
제 9 조 (이익배당 및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	**제 9 조 (이익배당 및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및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중 이백만(2,000,000)주로 한다.	<삭 제>
	③항을 ②항으로
③ ~ ⑥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 10 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 10 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삭 제>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삭 제>
③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상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삭 제>
④ 상환가액은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가액으로 한다.	<삭 제>
⑤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상환주식의 발행 후 1개월이 경	<삭 제>

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① 회사는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이하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신 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 또는 특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 또는 특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식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 또는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이나 선택 사유, 조정이 기준일 및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주금납입일의 다음날)로부터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 설>	④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신 설>	⑤ 회사는 상환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11조에서 정한 전환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상환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 11 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 11 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삭 제>
②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전환주식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삭 제>
③ 전환청구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삭 제>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전환주식 1주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삭 제>
<신 설>	① 회사는 주주 또는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신 설>	② 전환으로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이하"**전환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다만,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발행시 이사회에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유,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 설>	④ 전환주식의 주주 또는 회사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주금납일의 다음날)로부터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식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 제 13조의 규정을 -----

제 12 조 (주권의 종류)	<삭 제> 제 13 조 ~ 제 53 조를 제 12 조 ~ 제 52조로 각각 변경
제 38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과 회사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신 설>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제 37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과 회사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10호를 7~11호로 6.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8. 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 안건에 관한 사항 9.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임면 10. 기타 회사의 주요한 경영에 관한 사항 <신 설>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회일 7일 전에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9.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②항을 ③항으로 ②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0조의4에 따른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감독한다.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부칙** 이 정관은 2025 년 3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